

『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물 관리종합 대책에 의하여 200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
- '99. 4월 국무총리 주재 『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』에서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확정
- 기채상환 재원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비 확보
- 사용료의 현실화로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 유지와 하수도 민원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

3. 주요내용

- 하수도 요금의 조정 : 현행 요금 수준에서 평균 39.4%인상(안 별표1)
- 이의 신청기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(안 제20조)
- 체납세 관련 규정중 단서 조항 삭제(안 제23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, 제131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, 제137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
- 「하수도법」 제21조(사용료 등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(요금)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2조의2(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)
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
- 「지방세법」 제73조(이의신청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, 기채상환 자금 확보 및 하수도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업종별 평균 39.4%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
- 2005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3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16년까지 244억원의 기채상환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기업 특별회계 독립채산성 유지와 하수도 민원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상당한 투자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하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,
- 다만, 과도한 인상율로 인해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, 붙임의 『하수도 요금 인상안 대비표』를 참조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요구됨.

하수도 요금 인상안 대비표

업종	사용단계 (m ³)	사용료(천원) ('06년 2~9월)	현행		개정안		인상		사용료대비 점유율 (%)	비고
			요금	가중치	요금	가중치	금액	비율		
	총평균	15,308,011	217.45		303.3		85.9	39.4%		
가정용	업종 평균(합계)	1,964,896	125.3	0.58	213.6	0.70	88.3	70.5%	100	
	0~20(1단계)	1,104,112	120	1.00	210	1.00	90	75.0%	56	
	21~30(2단계)	653,794	160	1.33	330	1.57	170	106.3%	33	
	31이상(3단계)	206,990	240	2.00	450	2.14	210	87.5%	11	
일반용	업종 평균(합계)	1,652,508	279.9	1.29	457.7	1.51	177.8	63.5%	100	
	0~100(1단계)	357,139	220	1.00	350	1.00	130	59.1%	22	
	101~300(2단계)	416,424	270	1.23	470	1.34	200	74.1%	25	
	301~1000(3단계)	339,136	330	1.50	590	1.69	260	78.8%	21	
	1001~2000(4단계)	147,044	400	1.82	660	1.89	260	65.0%	9	
	2001이상(5단계)	392,765	470	2.14	760	2.17	290	61.7%	23	
욕탕용	업종 평균(합계)	557,648	791.4	3.64	793.5	2.62	2.1	0.3%	100	
	0~1000(1단계)	20,837	570	1.00	660	1.00	90	15.8%	4	
	1001~1500(2단계)	25,143	670	1.18	730	1.11	60	9.0%	5	
	1501~2000(3단계)	23,831	780	1.37	800	1.21	20	2.6%	4	
	2001이상(4단계)	487,838	900	1.58	860	1.30	△40	△4.4%	87	
산업용	업종 평균(합계)	11,132,959	230.0	1.06	305.2	1.01	75.2	32.7%	100	
	톤당(1단계)	11,132,959	230	1.00	306	1.00	76	33.0%	100	

※ 단, 가중치는 2006년 2월~9월 기준임